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법·제도 담당

제 목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정책 재추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지난 '15년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의 화재진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안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동 시설의 안전성·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득'보다 '실'이 많아 설치 자제로 결론짓고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에어돔형이 아닌 지붕형 설치 권고로 '17년 가이드라인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다시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 간담회가 10.14(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19.10.7(월)까지 귀 사의 의견을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을 기초로 협회 10월 정례회의(10.11) 시 논의하여 업계 입장 확정할 계획입니다.

붙 임 : 1.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 회 장



팀 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회장	김상배	회 장	이민석
협 조							
시 행	한매협 2019 - 64호 (2019. 9. 30)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iwl.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 주요내용

가 그간의 경과

가. 환경부,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15.3.11)

-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화재사고 시 에어돔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에 많은 지장이 있어 동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나. 협회, 매립시설 인·허가 검토 시 에어돔 설치 자제 의견 환경부 제출('16.4.11)

-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후 실제 현장의 안전사고 (에어돔 붕괴, 화재, 내부 작업환경 열악 등)로 인해 에어돔 설치 자제 결론 환경부 제출

다. 환경부, 폐쇄형(에어돔형 및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16.8.23)

- 에어돔형 매립시설을 폐쇄형 매립시설로 개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과 내부 공기질 등을 감안하여 에어돔형 보다 지붕형 설치권고

<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예시 >



에어돔형



지붕형

라. 협회, 폐쇄형 매립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배포('17.10.11)

- 폐쇄형 매립시설이 갖고 있는 붕괴, 화재, 폭발 등에 대한 위험성 우려로 '폐쇄형 매립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협회 회원사들에게 운용 요청

나 그간 제기된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장·단점

구 분	주요내용
장 점	- 침출수 발생이 적고 일일복토와 중간복토 생략 가능 - 완화된 매립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적용으로 시설 운영비 절감 - 눈이나 호우로 인한 폐기물 유실,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 방지 가능 - 외부 환경영향 최소화로 민원 예방
단 점	- 관리형 매립시설 대비 높은 설치비용 - 악취, 비산먼지, 고온 등 열악한 환경으로 작업자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 - 폐쇄된 공간 내에서 매립가스에 의한 폭발 가능성 존재 - 반응성 높은 금속폐기물 매립 시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 높음 - 비바람, 폭설 등에 의해 파손되어 공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 - 화재 또는 붕괴 등으로 침출수 외부 유출사례 발생

다 환경부 개정 추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초안
설치기준 [별표 9]	〈신 설〉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2) 관리형 매립시설 카)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변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기준 [별표 11]	〈신 설〉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2) 관리형 매립시설 카)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법제화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	사 유

2019. . .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귀중